

■ 직원보수규정

현행	개정(안)	사유
제5조(통상임금) " <u>통상임금</u> "은 기본급의 2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	제5조(통상임금) " <u>통상임금</u> "은 <u>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바에 의한다</u>	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(통상임금)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
제19조(야간근무수당) 직원이 22:00부터 다음날 06:00 사이에 근무한 때에는 매시간당 통상 임금의 184분의 1의 5할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.	제19조(야간근무수당) 직원이 22:00부터 다음날 06:00 사이에 근무한 때에는 <u>법정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	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 준수를 위한 문구 반영
제20조(시간외근무수당) <u>직원이 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매시간당 통상 임금의 184분의 1의 15할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.</u>	제20조(시간외근무수당) <u>직원이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	
제21조(휴일근무수당)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매시간당 통상임금의 184분의 1의 15할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.	제21조(휴일근무수당) 직원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<u>법정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	
제22조(시간외 및 휴일근무) ① 상주근무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 한다. 1.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(부서장)의 승인을 얻어 <u>인당 시간외와 휴일근무를 합하여 51시간/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22조(시간외 및 휴일근무) ① 상주근무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는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 한다. 1.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 (부서장)의 승인을 얻어 <u>법정 시간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</u>	